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복지·고용노동

1.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을 위해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이번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년도 국가암검진 시행 내용

추진배경	암검진 권고안 개정에 따라 관련 변동사항 반영
주요내용	간암 검진주기 1년에서 6개월로 조정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기준 30세에서 20세로 조정
시행일	2016년 1월

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희귀질환 중 전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

**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내용 ① 2016년 1월부터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2016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③ 2016년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수면 내시경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연중)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됩니다.

-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5년 14종 백신 → 2016년 15종 백신 지원(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상반기 중 추가 예정)

-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대상 및 지원연령 등은 2016년 상반기 안내 예정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

2016년도 지원 백신(15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자궁경부암

4.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0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5천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2016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배경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아래 ① ~ ③ 모두 충족 시 ① 연령: 만 65세 이상 ② 대상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③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범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신청절차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대상자 확정, 의료기관에 수술의뢰 및 지원금 지원
시행일	2016년

5.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추진배경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 기준 완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시행일 2016년 1월 1일

6.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60세 정년제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하였습니다.
 - 2015년 12월 이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 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

주요내용 ①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기간 한시 연장 (2015년 말 → 2018년 말)

②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임금감액률 10%~20% → 10%)

③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감소임금 일부지원)

시행일 2015년 12월

7.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15년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였으나,
-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여 1개월 최대 150만원이던 것으로 3개월 4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이 급여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한 배우자(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추진배경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주요내용 “아빠의 달” 급여지급 기간 확대 (1개월 → 3개월)

시행일 2016년 1월

8. 2016년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

함)으로 월 1,260,270원 (6,030원×209시간) 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습니다.

9.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 부담

2016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75만 7천원에서 최대 1,260,270원 (월 최저임금액) 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 2016년의 경우 2월 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 (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주요내용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757,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832,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908,4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984,100원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260,270원

시행일 2016년 1월 1일 (잠정, 행정예고 중) 